

심판위원회 규정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KOREA BASEBALL SOFTBALL ASSOCIATION

심판위원회 규정

제정	2017. 07. 18.
개정	2021. 12. 03.
개정	2023. 07. 10.
개정	2023. 12. 18.
개정	2024. 02. 26.
개정	2024. 08. 23.
개정	2025. 01. 21.
개정	2025. 08. 07.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37조 제①항 및 제④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며, 그 명칭은 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심판위원회 설치 목적) 위원회는 심판이 스포츠의 기본 정신과 책임감을 갖고 경기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심판으로서의 역할, 임무,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경기진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협회 위원회 및 각 시·도 지부, 전국규모연맹체(이하 “연맹 체”라 한다) 위원회 및 등록 심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② 각 시·도 지부, 연맹체는 이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단체 이사회 승인을 받아 ‘심판위원회 규정’을 정하고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한체육회 규정과 이 규정이 상이할 경우 대한체육회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각 시·도 지부 및 연맹체의 규정과 이 규정이 상이할 경우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1. 심판이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심판의 권익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
3. 심판양성 교육(심판강습회)에 관한 사항
4. 심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심판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3인 이하
 3. 위원 7명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②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협회 정관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협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2. 동일 대학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3. 경기인(지도자, 선수 및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출신자가 재적위원수의 5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지도자로 재직 중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5. 제16조 ①항에 의거, 선임한 종목별 심판팀장을 포함한다.
-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사무처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하에 세부종목별(야구·소프트볼·생활체육) 심판 소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대회기간에 심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다루기 위해 대회 개최 전 까지 경기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심판 포함)로 구성된 3인 이상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결정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본다.
1. (야구·소프트볼·생활체육) 심판 소운영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 위원장, 부위원장, 종목 심판팀장
 2. (야구·소프트볼·생활체육) 심판 소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제26조(심판의 제척), 제26조의 2(심판의 기피), 제26조의 3(심판의 회피), 제27조(심판배정) 등과 관련한 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대회의 심판 배정

2) 심판 소운영위원회는 경기일 전 심판을 배정하고 심판에게 통보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되, 위원장 임명은 이사회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협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임기만료일은 정기총회일 전날이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3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3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10조(회의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1조(의결정족수)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위원회 회의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협회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해당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거나 위원장이 제척하여야 한다.

제13조2(위무사항)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심판 등록 및 관리

제14조(심판등록 및 활동) ①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심판자격을 취득한 후 경기인등록규정 제7조 2, 제21조에 따라 심판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으로 등록한 사람만이 협회 심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③ 심판 등록 자격 공통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만 23세 이상인 자
2. 명지전문대학·KBO·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공동 야구심판학교 과정을 수료한 자
(2018년 이후 위촉 심판부터 적용)

④ ‘야구’종목 심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각 지부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은 지부에서의 심판경력이 3년 이상이 된 사람
2. 신입 심판 위촉대상자는 만 32세 이하인 사람으로 본 협회가 실시하는 심판강습회를 수료해야 심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때, 신입 심판 위촉 대상자의 수는 협회 주최 전국대회 운영 및 예산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5명 이하로 한다.

⑤ ‘소프트볼’종목 심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 협회가 실시하는 소프트볼 심판강습회를 수료한 사람

⑥ 제①항에 따라 등록한 심판의 자격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협회의 심의를 거쳐 심판 자격정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⑦ 심판의 등록 취소는 협회 경기인등록규정 제25조에 따른다.

제15조(정보제공) ① 협회는 등록심판의 기본정보, 선수·지도자경력, 심판경력, 교육 이수경력, 상벌사항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회 홈페이지 및 체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 또는 자료 요청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심판 활동 실적발급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

제16조(심판 팀장 선임 및 지원) ① 협회는 심판부 관리 및 소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종목별 심판팀장을 선임할 수 있다. 심판팀장은 경기인등록규정에 의거, 협회에 지도자 및 심판의 총 등록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에 한한다. 선임된 심판 팀장은 심판부를 대표하며, 당연직 심판위원회 의원으로서 이사회 승인 후 활동할 수 있다.

② 야구와 소프트볼 각 심판팀장에게는 고정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급 규모와 방식은 별도 계약에 따른다.

제4장 심판양성교육 (심판아카데미)

제17조(심판아카데미 참여) ① 협회에 등록된 심판은 심판의 공정성 제고와 자질함양, 인성 교육을 통해 심판 부정, 비리를 일소하여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체육회 주관으로 시행·운영하는 심판아카데미 교육대상이며, 이수 심판에 대해서는 모든 체육단체 역할 분장 시, 인센티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② 교육에 참가한 심판은 체육회의 운영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제18조(심판 교육실시) ① 협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심판에 대한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운영한다.

② 교육내용은 집합교육, 보수교육, 강습회, 심판활동과 도덕, 공정한 경기운영과 판정, 심판의 책임감 등 교양 강좌와 규약, 경기규칙, 판정의 이론, 실기 교육 등 협회의 실정에 맞게 실시한다.

③ 심판은 자질향상과 품위를 갖추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

- (1) 매년 협회가 실시하는 심판강습회
- (2)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심판세미나, 심판아카데미
- (3) 국제심판강습회, 외국인 심판학교, KBO 심판학교

제5장 상임심판 운영

제19조(상임심판의 정의) 체육회가 협회 심판위원회에서 추천한 심판을 상임심판으로 승인하여 안정적으로 심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20조(기능 및 역할) ① 상임심판은 경기와 관련해 일선 지도자, 학부모 등과 연관된 이권에 연루됨이 없이 중립적·독립적으로 활동하며 협회 심판 교육 담당과 심판들의 권리를 대변한다.

② 상임심판은 국내종합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등에서 심판 활동을 하며, 동시에 체육회와 협회 심판 간의 가교 역할을 한다.

제21조(임무) ① 상임심판은 어떠한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상임심판은 심판의 관련 규정과 협회의 규약 및 심판 규정을 준수하고 경기규칙에 따라 공정하고 명확한 판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상임심판은 경기운영 및 판정에 있어 공명정대하게 양심에 따라 판정한다.

제22조(선임) ① 체육회는 상임심판 자격 기준에 따라 심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상임심판을 승인한다.

② 협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구비한 자에 한하여 체육회에서 정해진 인원수와 제출 양식에 따라 상임심판을 추천한다.

1. 국내 심판경력 4년 이상 자
2. 추천 시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30세 이상 50세 이하인 자
3. 심판, 등록선수 및 지도자가 아닌 자
4. 매년 국내종합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수 3분의 2이상 참여가능한 자
5. 체육회 주관 심판아카데미 이수 자
6. 협회 규약, 규정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23조(활동기간) ① 위원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1년간 활동한다.

② 활동기간동안 지도자·선수 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된 어떠한 팀과도 고용관계를 맺을 수 없다.

제24조(수당지원) ① 상임심판은 협회에서 지급하는 필요 수당(심판 수당, 출장비 등)

외에 소정의 수당을 지원받는다.

- ② 상임심판은 매월 말일에 수당을 지원받으며 말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원받는다. 단, 매년 선임(교체) 절차를 감안하여 11개월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심판평가 및 배정

제25조(심판평가) ① 협회는 심판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한다.

- ② 협회는 상임심판 및 협회에 등록하여 당해 연도 경기진행에 참가한 심판에 대하여 등급별로 판정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통해 심판고과를 관리하고 승급이나 배정 시 자료로 활용한다.
- ③ 협회는 협회 실정에 맞게 지표 등을 매 경기 가능한 10개 이상 항목을 설정하고, 평가 위원이 (별표 1) 보고서 양식에 의거 작성해 평가에 반영한다.
- ④ 협회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비시즌 기간 야구 심판 생계 보조를 위해 관련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등급별[A~C등급, 겸직(직장인), 심판 팀장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신입 야구 위촉 심판의 경우, 심판 활동비 보조금을 월 1백만원 이하, 7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심판의 제척) 심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 경기 심판배정에서 제척된다.

- 1. 심판이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지도자·선수관리담당자(이하 ‘경기참가자’라 한다)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2. 심판이 경기참가자와 동일 소속팀이거나 동일 소속팀으로 활동했던 경우

제26조의2(심판의 기피) ① 경기참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심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1. 심판의 제26조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 심판에게 공정한 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심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기참가자는 심판기피 신청서(별표 2)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기피 당한 심판은 기피 신청에 대해 불인정하는 경우 소명서(별표 3)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접수된 소명서 내용을 심사하여 대회시작 전까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대회시작 전까지 기피 결정을 못해 대회가 진행되더라도 기피 결정 전까지는 심판 배정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다,
- ⑤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경기 시작 전까지 심판 기피 여부를 결정 및 통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기피 당한 심판이 기피 신청에 대해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기피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6조의3(심판의 회피) 심판 본인이 제26조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경기 심판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제27조(심판배정) ① 협회는 특정 팀에게 편파적 배정이 되지 않도록 하며, 심판의 경력, 자질, 기량을 바탕으로 위원회의 결정으로 모든 대회의 심판을 배정하고, 계시관 등을 통해 경기참가자들이 배정된 심판 명단을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② 학연(모교)에 관련된 심판은 모교 경기의 배정에서 제외한다.
- ③ 동일대회 기간 중 동일 팀의 경기에 한 번씩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심 2회, 루심 3회까지 배정할 수 있다.
- ④ 심판의 해외파견이나 기타사유로 결원이 생겨 심판이 부족할 때에는 각 시·도지부에서 지원을 받아 배정할 수 있다.
- ⑤ ‘야구’종목 심판 중 위촉 3년 미만인 자는 고등학교·대학·실업대회의 4강 이상의 게임에는 가능한 주심으로 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루심은 예외로 한다.
- ⑥ ‘야구’종목 지방대회 중 고등학교 이상의 경기에는 3년 이상의 심판 경력자를 우선순위로 파견한다.
- ⑦ 협회는 위원회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 순으로 우선 배정한다.

1. 체육회가 승인한 상임심판
2. 체육회가 주관하는 심판심화교육(심판아카데미)과정을 이수한 심판
3. 체육회가 주관하는 심판양성교육(심판아카데미)과정을 이수한 심판

제28조(심판판정) ① 심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1.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심판 관련 규정과 해당 단체의 규약 및 심판 규정을 준수하고 경기규칙에 따라 명확한 판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3. 경기 운영 및 판정에 있어 공명정대하게 양심에 따라 판정한다.
- ② 심판은 경기 진행 중 경기규칙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는다.
- ③ 심판은 경기종료 후 공식 경기기록 등을 기록원과 확인하며, 협회 양식에 따라 경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협회는 국내종합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시 비디오 재 판독과 -최소 3년 이상 영상보관의 의무를 대회요강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⑤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와 상고는 국제연맹 및 협회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9조(심판의 품위) ① 심판은 체육회 또는 협회에서 발급한 신분증서를 패용하여야 한다.

- ② 심판은 협회에서 규정한 복장과 장비만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심판은 반드시 필요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④ 심판은 협회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⑤ 심판은 오심 및 편파판정에 대하여 협회 및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징계(문책)를 받을 수 있다.
- ⑥ 심판은 선수·지도자의 팀(단체 등) 입단, 계약 또는 기타 취직의 알선, 협조 등 심판으로서의 직분이나 직무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7장 상벌 및 심판 매뉴얼

제30조(심판의 상벌) ① 심판이 명백한 오심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심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언행을 할 경우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② 오심 누적 시 심판자격을 강등할 수 있으며, 오심 횟수에 따라 심판자격도 박탈할 수 있다.

제31조(심판의 포상) ① 심판 평가 및 교육 우수 심판에 대해서는 체육회 등에 표창을 상신하며 심판 승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우수 심판에 대해 체육회에 국제기구 연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심판의 자질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모범(우수) 심판상 수상대상자를 협회에 추천한다.
- ④ 위원회는 심판으로 다년간 품위를 유지하여 타의 모범이 된 사람이 은퇴할 시에는 공로패 수상자로 협회에 추천한다.

⑤ 동 추천기준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2조(심판매뉴얼) 협회는 심판매뉴얼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8장 해외파견

제33조(해외파견) ① 심판의 해외파견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파견한다.

1. 야구

가. 대회 구분

- (1) A급 대회 : 올림픽, 아시안게임, WBSC 세계선수권(U-23),
아시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
- (2) B급 대회 : WBSC·BFA (연령별)선수권대회(U-18, U-15, U-12),
각급 국제친선 대회, 리틀리그 국제대회, 기타 대회

나. 파견경력

- (1) A급 대회 : 본 협회 심판 경력 5년 이상인 자
- (2) B급 대회 : 본 협회 심판 경력 3년 이상인 자

2. 소프트볼

가. 대회 구분

- (1) 세계 대회 : 올림픽, WBSC 월드컵, WBSC 연령별 월드컵, 기타 세계대회
- (2) 아시아 대회 : 아시안게임, 아시아컵, 대학아시아컵, 연령별 아시아컵,
기타 아시아 대회

나. 파견경력

- (1) 세계 대회 : WBSC 심판자격 소지자 중 본 협회 심판 경력 5년 이상인 자(舊대한소프트볼협회 심판 경력 포함)
 - (2) 아시아 대회 : WBSC 또는 SA심판자격 소지자 중 본 협회 심판 경력 3년 이상인 자(舊대한소프트볼협회 심판 경력 포함)
- ② 국제대회 파견경력에는 결격사유가 없으나 본인의 기량·자질·인격 등에 상당한 결격 사유가 있어서 해외파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유보 또는 취소시킬 수 있으며 파견 경력은 미달되나 자질과 기량이 뛰어나며 심판으로서의 공로가 인정될 경우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파견을 결정한다.
- ③ 국제심판회의 또는 국제심판세미나의 대표파견은 국제적으로 면식과 능력을 인정 받는 심판이나 심판위원장을 대표로 하여 파견해야 한다.

부칙 (2017. 7. 18)

제1조(시행일)

- ① 이 규정은 이사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제2조 [제정]

1. 2017년 제2차 이사회(2017. 7. 18)

부칙 (2019. 01. 17)

제1조 [개정]

1. 2018년 제7차 이사회(2019. 01. 17)

부 칙 (2023.07.10. 제12차 이사회)

제1조(시행일)

- ①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정한다.

부 칙 (2023.12.18. 제14차 이사회)

제1조(시행일)

- ①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정한다.

부 칙 (2024.02.26. 제16차 이사회)

제1조(시행일)

- ①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정한다.

부 칙 (2024.08.23. 제18차 이사회)

제1조(시행일)

- ①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정한다.

부 칙 (2025.01.21. 제21차 이사회)

제1조(시행일)

-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정한다.

부 칙 (2025.08.07. 제2차 이사회)

제1조(시행일)

-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정한다.

심판 행동강령

본 협회의 심판 행동강령의 목적은 심판이 건전하고 공정한 윤리관을 고취하여 경기에서 위엄과 존엄 있는 심판 자세 확립과 경기의 원활한 운영을 기함에 있다. 또한 경기 이외의 실생활에서도 언행에 유의하여 타인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I 심판의 일반적 사항

1. 경기장내 복장규정 및 행동

심판은 본 협회를 대표하여 경기를 주재하는 사람이다. 복장을 단정히 하여 심판답게 보이도록 한다. 긴 바지, 깃이 있는 셔츠를 권장한다. 흡연은 반드시 지정 된 장소에서만 하여야 한다.

2. 경기장 도착

심판은 경기장 도착과 동시에 심판대기실로 향한다. 심판총무는 경기에 배정된 경기운영위원회에게 심판들이 도착하였음을 통보해야 한다.

* 심판실 : 심판과 대회 임원을 제외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3. 경기 전 심판 회의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심판 회의가 개최되어야 한다. 대회규정 및 경기진행 규정 숙지 및 검토가 요구된다. 경기장에 처음 방문하면 심판은 경기장을 둘러봐야 한다.

4. 심판 입장

심판들은 경기 일정별(보통 첫 투구 7~10분전) 경기장에 입장할 준비를 해야 한다. 모든 심판은 동시에 경기장에 입장한다. 경기 사용구는 볼 취급자나 3루심이 전달한다. 경기 종료 후 심판은 해당 경기에 배정된 볼 취급자에게 사용구를 반납한다. 배트의 공인여부를 경기 전 확인한다.

5. 심판, 감독 라인업 교환

주심/심판조장이 주재한다. 라인업 교환과 그라운드 룰이 논의 된다.
가능하다면 간단명료하게 진행한다.

6. 팀들과의 관계

중립적이고 모든 참가자들을 존중한다. 그리고 참가한 전 팀에게 모든 면에서 대회 규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요구사항이 정당하면 그것(들)을 충족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하지만, 기준과 지침을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지켜야 하며, 항상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7. 사건 및 사고에 대한 보고

경기 전, 후에 발생한 모든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육하원칙에 준하여 정해진 양식으로 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언론 접촉 금지

심판판정에 대하여 어떤 유형의 언론(SNS, 인터뷰 등)과도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Ⅱ 심판 윤리 사항

심판들은 대회기간 및 실생활에 행동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유념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 심판은 경기장에서 야구·소프트볼에 관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공식 대표자이다. 정중하고 공명정대함 속에 단호히 대처하여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모든 관계자들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한다.

3. 위엄과 존경 그리고 공평무사한 정신으로 대회에 임하며, 논의할 수 있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4. 심판은 경기장에서는 선수와 사담에 빠져서는 안 되고 또 코치박스 안에 들어가거나, 임무중인 코치와 불필요한 대화(담화)를 하여서는 안 된다.

5. 팀 관계자에게는 항상 예의를 차려야 하나 학교를 방문하거나 특정학교 관계자와 친밀하게 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6. 공명정대함을 엄정 유지하여 이해상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떠한 상황도 피해야 한다.

7. 야구·소프트볼 규칙 및 대회규정, 진행규정을 숙지하여 대립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라.

8. 심판 자신이나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를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경기 중 판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결정권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을 편들거나 금품수수, 그 외 어떤 이유로도 경기 관계

자와 개인적인 만남 또는 *향응 및 각종 편의를 제공받아서 안 된다.

9. 지방 출장 시 시·도 협회 임원 및 시·도 심판에게도 역시 향응 및 각종 편의를 제공 받아서는 안 된다. 식사장소에서 부득이 하게 마주쳤을 때에는 최대한 빨리 식사를 마친 뒤 본인이 계산 한 이후 신속하게 나온다.

10. 지도자들(감독,코치,부장)과의 선후배 관계를 명분으로 한 친목도모 활동(골프 등)을 금지한다.

11. 심판은 승부조작 및 내기, 도박 등을 하지 않는다.

12. 심판부 내 선임의 갑질 행동을 금지한다.

13. 심판은 심판 직무 외에 야구 선수를 지도하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14. 심판은 심판 직무 외에 야구용품을 판매하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15. 심판은 기타활동으로 인하여 심판으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16. 상기 내용을 통한 본인의 법적 책임에 대해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향응 : · 특별히 융숭하게 대접함. 또는 그런 대접.
· 상대방에게 음식이나 술, 골프 따위의 대접.

서 약 서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상기 본인은 (사)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심판으로서 공정한 판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본 협회 심판위원회 규정 및 심판 행동강령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동강령에 위배된 사항으로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확인 즉시 심판에서 해임되고, 추후 징계세칙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또한, 각 대회에서 심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부상에 대해 협회에서 가입한 보험 보상 한도 내에서만 치료비 보상 처리되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서명인 : (서명)

사단법인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 귀하

평가위원 보고서

20 . . .

◆ 대회명 :

1. 경기 정보

작성자 : (인)

날짜	장소	대진 및 최종 결과	경기장 상태
월 일()		() vs ()	

시작	종료	소요시간	경기 중단	기타(연장/콜드)
:	:	:	: ~ :	

2. 심판 평가

* 100: 최우수, 90: 우수, 80: 준수, 70: 보통, 60: 노력

노력

위치	심판명	구분	내용	평가				
				100	90	80	70	60
주심		판정	볼/스트라이크, 파울, 보크, 아웃/세이프 등					
		경기운영	경고/퇴장, 규칙적용, 위치선정, 향의 대처					
		스피드업	타석이탈, 이닝교대, 투수교체 등					
1루심		판정	파울/페어, 바운드볼, 보크, 아웃/세이프 등					
		경기운영	경고/퇴장, 규칙 적용, 위치 선정, 향의 대처					
2루심		판정	바운드볼, 보크, 아웃/세이프 등					
		경기운영	경고/퇴장, 규칙 적용, 위치 선정, 향의 대처					
		스피드업	12초를 체크여부 등					
3루심		판정	파울/페어, 바운드볼, 보크, 아웃/세이프 등					
		경기운영	경고/퇴장, 규칙 적용, 위치 선정, 향의 대처					

◆ 승부조작 또는 불공정 행위 의심 사항
◆ 특이사항
◆ 대응 및 조치사항

[별표 2]

심판 기피신청서

대회명 * 경기명 기재	ex) 00000대회 (16강전)
--------------------	--------------------

신청인	성명: 구분: <input type="checkbox"/> 선수 <input type="checkbox"/> 지도자 <input type="checkbox"/> 선수관리담당자 (신청인 신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크)
-----	--

기피 심판	
-------	--

기피 사유	
-------	--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심판위원회 규정」 제27조의2(심판의 기피)제2항에 따라, 심판의 기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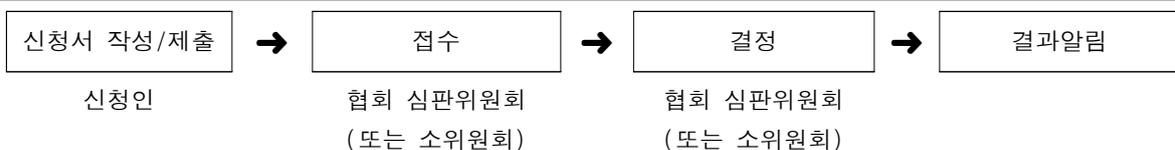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심판위원회(또는 소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필요시)	
---------------	--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표 3]

기피 신청에 대한 소명서(기피당한 심판)

대회명 * 경기명 기재	ex) 00000대회 (16강전)
소명 내용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심판위원회 규정」 제27조의2(심판의 기피)제3항에 따라, 기피 신청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합니다.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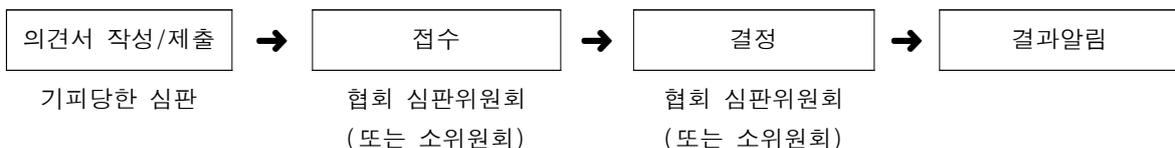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심판위원회(또는 소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필요시)	
---------------	--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m²]